

연구용역 시행에 관한 내규

1995. 6. 20 제정
2003. 11. 15 개정
2006. 2. 25 개정
2007. 8. 17 개정
2011. 6. 7 개정
2019. 6. 13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한교통학회(이하 학회) 명의의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수행 및 발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절차)

1. 외부입찰을 통한 학회명의 연구용역 수행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학회명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회원, 기관은 학회에 연구용역 개요, 연구진, 연구비, 기타 특수한 사항이 기재된 간략한 연구용역 수행 의향서를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2) 회장과 학술부회장은 제출된 의향서 검토 후, 연구용역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 3) 연구용역 수행 의향서 접수 시, 사안에 따라, 회원공지를 통해 추가로 수행 의사가 있는 회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4) 연구용역 수행 의향서가 복수가 되는 경우에는 학회의 협의, 조정, 평가 등을 통해 연구진을 결정한다.
2. 외부로부터 학회로 연구용역이 의뢰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공문 또는 구두의뢰 접수 후, 회장, 학술부회장, 행정부회장, 연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통하여 연구용역의 수행 여부 및 적합한 연구회를 결정한다.
 - 2) 해당 연구회 연구회장은 해당 연구회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을 구성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 3) 회장, 학술부회장, 행정부회장, 연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통해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을 최종 결정한다.
 - 4)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접수 전에 수행여부와 연구책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학회명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회원, 기관은 학회에 2조 1항 1)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용역 발주 의향서를 학회로 제출하고, 회장, 학술부회장의 검토, 협의, 조정에 따라 발주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인지대 등을 포함한 계약관련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5. 연구용역 수행 및 발주에 관한 확정 사항은 상임이사회의에 보고한다.

제3조 (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연구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연구관리위원회는 연구용역의 성격에 따라 착수발표회, 중간발표회, 최종발표회 등이 필요한 연구용역을 선별 확인하여 관리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연구용역비의 지급)

1. 선금급 및 중도급은 발주기관에서 수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준공급은 최종보고절차(최종발표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 2부 학회제출)가 완료된 후 지급토록 한다.
3. 각종 연구발표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준공급에서 정산한다.
4. 학회기여금은 연구용역비 총액의 15%를 공제한다. 단, 상임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5. 연구용역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서 정한다.

부칙

본 내규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